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기를 년2회 지원에서 매월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소관국장으로 하고 서면심의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한 적용 범조문 변경(제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 위임법규의 적용법규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제7조 제2항)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시기를 매월 지원으로 변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매월 개최해야 하는 바,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고 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방법 중 서면심의 방법 추가(제7조 제5항)
 - 융자신청자의 신청총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충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8. 2. 28 ~ 3. 19(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08. 3. 27)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부구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p>	<p>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 다)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 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 ----- ----- -----</p>
<p>제2조(정의) (생략)</p> <p>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4.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중소기업기본 법」 -----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수도권정비계획 법」 ----- -----</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 략)</p> <p>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 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 용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재정법」 -----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이하“구의원”이라 한다),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단서 신설></u></p> <p>⑥ (생략)</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u>기획재정국장</u> _____ _____ -- <u>지역경제과장</u> _____ _____ _____</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_____ _____ _____ _____, <u>다만, 용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용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p> <p>⑥ (현행과 같음)</p>